

제 1714 호
1993. 1.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 조 려

제 2974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	2
제 2975 호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율위한시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제 2976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증개정조례	9
제 2977 호	서울특별시소방시설치조례증개정조례	13
제 2978 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증개정조례	14
제 2979 호	서울특별시공설도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	15
제 2980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18
제 2981 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21
제 2982 호	서울특별시육의광고물등관리조례증개정조례	21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울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
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

●서울특별시조례제2974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내무국란 앞에 공보관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공보관	<p>1. 유선방송사업허가업무 중 자가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가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에 관한 사항 나. 자가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신청·심사 및 합의 등에 관 한 사항 다. 체신부장관의 자가유선방송 시설 검사결과 통보수리에 관 한 사항 라. 자가유선방송사업의 실시허 가 및 실시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마. 자가유선방송사업허가장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바. 자가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 가·신고수리 및 합의에 관한 사항 사. 자가유선방송사업 승계에 관한 사항 아. 자가유선방송사업 이용약관 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자. 자가유선방송사업의 유선방 송 실시결과와 보고수리에 관 한 사항 차. 자가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검 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카. 자가유선방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2호 ○ 동법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 호 ○ 동법 제7조, 제9조 및 동법시 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 동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28조제1항제6호 ○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7호 ○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8호 ○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9호 ○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10호 ○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11호 ○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제12호 	구청장
-----	--	---	-----

	<p>타. 자가유선방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p> <p>파. 자가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p> <p>○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4호</p>
<p>(별표)의 내무국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p> <p>가. 5급이하지방공무원·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2호다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p> <p>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p> <p>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p> <p>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6조의2, 제27조</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p> <p>○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16조</p>	<p>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p> <p>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 포함)</p> <p>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p> <p>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p>
<p>(별표)의 보건사회국관 중 제42호를 삭제한다.</p> <p>(별표)의 산업경제국관 중 제47호 내지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9호 내지 제1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7.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제조업의 허가</p>	<p>○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제7호</p>	<p>구 청 장</p>

<p>나. 제조업의 양도 및 합병인가</p> <p>다.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수리·허가취소 또는 정지 명령</p> <p>4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p> <p>가.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 표시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p> <p>나. 시료제공의 요구와 열사용기자재의 파기·수거 또는 제조방법 개선의 명령</p> <p>49.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신고의 수리·지정 취소 또는 정지명령</p> <p>119.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 등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감독·확인</p> <p>120.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의 준수에 대한 지도·조사 및 감독</p> <p>121. 무허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가 설치한 위반 광고물 등의 철거 등 조치</p> <p>122.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부에 대한 지도·검사 등</p>	<p>○ 동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p> <p>○ 동법 제35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p> <p>○ 동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10호</p> <p>○ 동법 제82조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p> <p>○ 동법 제41조제1항, 제3항,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8호</p> <p>○ 동법 제21조, 제42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p> <p>○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p> <p>○ 동법 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9호</p> <p>○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제1항제12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별표>의 도로국란 중 제9호 내지 제12호의 수입기관란 중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p> <p><별표>의 환경녹지국란 중 제80호, 제81호, 제85호 및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중 제87호를 삭제하며, 제88호 내지 제9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0. 자가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p>	<p>○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p> <p>○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의2호</p>	<p>구 청 장</p>

81.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의2호 ○ 소음·진동규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의3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의3호 	구 청 장
85. 운행차의 수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7호 ○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호 	구 청 장
86.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8호 	구 청 장
38. 유독물판매업·유독물취급업 및 특정유독물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구 청 장
가.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나. 유독물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다.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시설·장비 등의 개선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마.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사업장으 이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바.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사.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아. 특정유독물 사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8호 	
자.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보고 등 명령 및 검사		

<p>차. 청문</p> <p>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89.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p> <p>나. 개선부담금의 조정 등</p> <p>9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등으로부터의 생활악취의 규제</p>	<p>○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p> <p>○ 동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p> <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p> <p>○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제1항제2호</p> <p>○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별표)의 교통국란 중 제2호, 제12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호, 제11호, 제21호, 제60호 및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8호의 수입기관란 중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75호, 제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0.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의 운송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p> <p>11.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수리</p> <p>2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의 경우의 조치</p> <p>60. 창고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p> <p>나.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신축 신고시의 신고수리 및 변경 신고수리</p> <p>다.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p> <p>라.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p> <p>마. 사업계획·상호·창고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신고 수리</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p> <p>○ 동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6호</p> <p>○ 자동차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p> <p>○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3호</p> <p>○ 동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3호</p> <p>○ 동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4호</p> <p>○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5호</p> <p>○ 동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6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바. 창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p> <p>사. 임차약관의 인가 및 변경 약관의 인가수리</p> <p>아. 표준약관을 창고임차약관으로 정한 경우의 신고수리</p> <p>자.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p> <p>차. 사업승계의 수리(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 등)</p> <p>카.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p> <p>타.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p> <p>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p>	<p>○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7호</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8호</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8호</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8호</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8호</p> <p>○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8호</p> <p>○ 동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9호</p> <p>○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0호</p>	
<p>하. 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1호</p>	
<p>63.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p> <p>75.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7호</p>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5호</p>	<p>구 청 장</p> <p>구 청 장</p>
<p>76. 일반화물터미널 업무 중 다음의 사무</p>		<p>구 청 장</p>
<p>가. 일반화물터미널의 명칭·위치·규모·구조 또는 설비변경의 신고수리(전용화물터미널 포함)</p>	<p>○ 화물유통촉진법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p>	
<p>나.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다. 공사계획 내용조정</p>	<p>○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라. 공사완성 검사수리</p>	<p>○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p>	
<p>마. 일반화물터미널 이용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p>	
<p>바. 일반화물터미널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수리</p>	<p>○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p>	

<p>사. 일반화물터미널 이용규정의 인가 및 변경인가</p> <p>야.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p> <p>자.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차. 의견진술의 기회부여</p> <p>카.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8호</p> <p>○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2호</p> <p>○ 동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9호</p> <p>○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0호</p> <p>○ 동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1호</p>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국란의 제9호 내지 제12호 및 교통국란의 제2호, 제10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31호, 제63호와 제68호는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 폐지일부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율위한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②

●서울특별시조례제2975호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율위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유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 기지 및 정차장,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제15조"를 "제6조·제8조·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8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녹지의 이용기준"을 "녹지의 관리"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공원시설의 일부"로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말미에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 등에 의거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
-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

리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시설을 2개연도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을 조정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원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①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의2호에 규정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기능·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닌된다.

1. 광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 시설이 계획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 제6조제11의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허 조성된 동일 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환경보존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11의2호 점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청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도시계획구역 지정 이전 또는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관

리대상상 법당, 사찰, 요사,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담,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2호 나, 다, 라목 규정에 의거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성격상 지상에 노출함이 불가피한 환기구, 출입구 등의 부속시설은 당해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고려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돌출 부위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원의 점용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공원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동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을 조정 적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직영공원과 위탁공원에 입장하는 자로서 공원관리부서(위탁관리자 포함)의장이 공원관리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동조 제2항 중 제2호,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부서(위탁관리자 포함)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원상회복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원상회복 의무자 또는 관리비용 부담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 다고 판단될 때
2. 천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을 "녹지의 관리"로 하고, 제1항 중 "시장의 허가"를 "구청장의 허가"로, 제2항 중 "시장에게"를 "구청장에"로 한다.

제1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와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

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단서 중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을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원·녹지의 소유구분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소유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②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업무에 따른 비용은 제1항의 소유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별표 1> 공원입장료 중 어린이대공원의 어른 "600"을 "700"으로, 청소년 "300"을 "330"으로 하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어른 "1,000"을 "1,150"으로, 청소년 "800"을 "950"으로, 어린이 "500"을 "540"으로 하며, 월곡 제1근린공원의 어른 "800"을 "900"으로, 청소년 "600"을 "700"으로, 어린이 "500"을 "580"으로 하고, 비고란의 "직영공원의 경우"를 "직영공원 및 공단위탁 관리공원의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말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상을 조정기준은 92. 1. 1 이후의 공원시설 관리위탁료 및 점용료 결정에 적용한다.

③ (녹지이용허가 등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녹지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원상회복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조 및 제19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녹지이용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재산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소유구분에 따른 재산취득절차는 자치구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별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원)	비 고
공 통	운동장 사용	1회 3.3㎡당	15	
	사 진 촬 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10,000	
	영 화 촬 영	주간 1회당	55,000	야간은 주간의 2배
	투 화	1시간당	11,000	
		초과시간당	5,500	
	유 회 시 설 운 동 시 설 기 타 시 설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투자비 및 민간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다만,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사용료는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유흥시설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대 공 원	돌고래쇼장 관 람 료	어 른 1회당	350	
		청소년 1회당	230	
		어린이 1회당	110	
어린이 대공원	야외음악당 사 용 료	주간 1회당	33,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남 산 공 원	식물원관람료	어 른 1회당	230	
		청소년 1회당	120	
		어린이 1회당	50	
	차량통행료	버스, 대형화물 송용, 마이크로버스	700	
이륜, 소형화물		300		
전망대입장		어 른 1회당	1,200	부가가치세 별도
		청소년 1회당	800	
		어린이 1회당	800	

- (주) ○ 단채는 기본료율의 30%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19세 이상
 ○ 단 채: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

〈별표 4〉 공 원 전 용 료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 액	당해 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 노외 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당해 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용	"	당해 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이와 유사한 점용	"	당해 재산가액의 100/1,000

〈별표 6〉 공 원 녹 지 의 소 유 구 분			
재산별	구 분 기 준	구 분	
		시 소 유	구 소 유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은 시 소유 공원 · 사업소 및 사무소 관리공원은 시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자연 공원 · 묘지 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도시계획권, 광역권) · 시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토록 특별히 계획된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공원 · 면적 100,000㎡ 미만의 근린공원(근린생활권, 도보권) · 기타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소유시설과 관련 결정된 녹지는 시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 도로변의 녹지 · 하수처리장 등의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소유 녹지 이외의 녹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7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을 “소방기관설치및정원예관한규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명칭	위	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종로구	수송동 146-2	중구·종로구 및 서대문 일부		
중부소방서	중구	부학동 43-7	중구·종로구 및 동대문구 일부		
성동소방서	성동구	구의동 253-23	성동구 일원		
용산소방서	용산구	한강로 2-89	용산구 일원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구	장안동 434	동대문구 및 중랑구 일부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00	영등포구 일원		
성북소방서	성북구	종암1동 3-72	성북구 일원		
도봉소방서	도봉구	방학동 708-1	도봉구 일원		
노원소방서	노원구	하계동 215-63	노원구 일원 및 중랑구 일부		
서부소방서	은평구	녹번동 48-5	은평구 일원 및 서대문구 일부		
마포소방서	마포구	신수동 100	마포구 일원		
강남소방서	강남구	삼성동 171-3	강남구 일원 및 서초구 일부		
남부소방서	서초구	반포동 190-2	관악구·동작구 일원 및 서초구 일부		
강서소방서	강서구	동촌동 630-2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		
강동소방서	강동구	성내동 541-39	강동구 및 송파구 일원		
구로소방서	구로구	고척동 63	구로구 일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8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 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79호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 화장장의 관리 및 사용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 화장장의 관리 및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묘시설"이라 함은 조성묘지, 비조성묘지, 납골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 2. "조성묘지"라 함은 개성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 3. "비조성묘지"라 함은 시립묘지 중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 4.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 5. "적출물"이라 함은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장기, 사대아, 태반 및 수족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등) ①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이하 "장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성묘지(납골묘지를 포함한다) : 6.6㎡
- 2. 비조성묘지 : 6.6㎡ 이상 19.8㎡ 이내

제6조(사용료등) 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단, 조성묘지 분묘 관리비는 매 3년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2.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기간)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조성묘지의 분묘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9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비를 세우고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분묘의 관리 책임) 시립묘지 내 분묘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묘지 : 시장
2. 비조성묘지 : 사용자

제15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묘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납골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여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시립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장묘시설의 명칭 등

명 칭	관리소 소재지	관 장 사 항
장묘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 178-1	장묘시설 총괄운영, 사업소 내 시설운영
망우리묘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 15	망우리묘지 내 시설운영
내곡리묘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내곡리 산 99	내곡리묘지 내 시설운영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분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일제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조성묘지(종전규정에서 공원묘지)의 분묘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명 칭	관리소 소재지	관 장 사 항
벽제리묘지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 4-1	벽제리묘지 내 시설운영
용미리제1묘지 (종전규정의 용미리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 91-1	용미리제1묘지 내 시설운영
용미리제2묘지 (종전규정의 공원묘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 65-1	용미리제2묘지 내 시설운영
<별표 2> 장묘시설 사용료 등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요 금
묘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묘지 (3.3㎡당) • 비조성묘지 (3.3㎡당)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 	140,000 21,900 44,200
화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만 13세 이상) 1구당 • 소인(만 12세 이하) 1구당 • 사산아 1구당 • 개장유골 1구당 • 적출물 10kg당 	15,000 12,000 5,000 7,000 8,000
납 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당 (15년 사용) • 1구당 (10년 사용) 	15,000 10,000
<p>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 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3. 1. 1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980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00”을 “200”으로, “50”</p>		
<p>을 “100”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별표 1〉				
기본전용사용료(평일 주간 기준)				
(단위 : 원)				
운 동 장 별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행 사	
잠실종합운동장	체 육 관	55,000	326,000	
	수영장	09 : 00 ~ 18 : 00	709,000	1,418,000
		09 : 00 ~ 12 : 00	235,000	470,000
		12 : 00 ~ 18 : 00	599,000	1,198,000
	야 구 장	102,000	386,000	
올림피쿠경기장	212,000	849,000		
동대문운동장	장 충 체 육 관	32,000	164,000	
	축 구 장	70,000	229,000	
	야 구 장	38,000	231,000	
	수 영 장	99,000	107,000	
	정 구 장 (변 강)	7,700	-	
	배 구 장	10,000	51,000	
	역 도 장	10,000	51,000	
부 동 운동장	주 경 기 장	66,500	217,800	
	야 구 장	96,800	363,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함.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의 동절기(11월~다음 해 4월까지)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고, 다이빙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하며 보조수영장은 5할을 징수함. ○ 잠실체육관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체육관 기본사용료의 3할을 징수하고 체조관은 체육관 사용료의 3할을 징수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주경기장 기본사용료의 3할을 징수함. 			

<별표 2> 개인연습사용료(평일 2시간 기준)			(단위: 원)
운 동 장 별		요 금	
잠실종합운동장	체육관		3,000
	수영장 (대인)		1,800
	(소인)		1,200
	야구장		3,000
	주경기장		3,000
	추경기장		400
	트레이닝센터		1,000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1,500
	육상구장		200
	야구구장		1,500
	정구장 (1면당)		3,400
	씨름장		1,500
	수영도장		500
	역도장		600
북운동장	축구장		3,000
	육상구장		400
	야구장		3,000
비고	○ 소인(13세 이하)의 연습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할을 징수함(수영장 제외).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7할을 징수함. ○ 월 회원 사용권 발행시는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트레이닝센터 사용은 무료.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 기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사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증 계 방 송 료			(단위: 원)
구 분		TV	라 디 오
체 육 행 사		160,000	80,000
체 육 이 외 행 사		240,000	120,000
비고	○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운동장별 증계방송료의 5할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운동장별 TV 증계방송료와 동액징수 ○ 프로경기 증계방송료는 해당 운동장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국내방송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할을 징수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광고료 : 애드벌콘 1개 1일(주간)	12,000
선전물 (부착광고물 1m×10m 이내) (전열, 전탑 1㎡당)	매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사(경기) 주최자와 수의 계약할 수 있음.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액의 20%
기타 물품판매 대여	판매액의 10%
<p>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3. 1. 13 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㉔</p> <p>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3. 1. 13 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981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우</p>	
<p>●서울특별시조례제2982호 서울특별시우의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우의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을 “①”항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시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